

제8차 정기 재정운영위원회



회 의 록

2020. 6. 25.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 개요

1. 서면결의일정 : 2020. 6.24.(수) ~ 6.25.(목)

2. 결의방법 : 위원 메일 전송, 안건 설명 후 동의 여부 서명
(메일 또는 팩스) 득함

3. 서면결의현황 : 재적위원 28명 중 26명 서면결의

가. 서면결의 찬성위원 : 26명

- 최병호 위원, 강정현 위원, 권오복 위원, 김경자 위원, 김덕수 위원,
김동욱 위원, 김양균 위원, 김연숙 위원, 김진현 위원, 류기섭 위원,
박용현 위원, 박재근 위원, 박진천 위원, 백대용 위원, 변희영 위원,
송재동 위원, 유주동 위원, 윤영호 위원, 이기일 위원, 이태희 위원,
정만화 위원, 정영호 위원, 정월자 위원, 최미영 위원, 최성은 위원,
추광호 위원

나. 서면결의 불참위원 : 2명

- 신영숙 위원, 이용재 위원

II. 회의내용

1. 보고사항

-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진 경과

2. 부의안건

- 의안 1호 : 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의 건
※ 소관부서 : 통합징수실
- 의안 2호 :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건
※ 소관부서 : 재정지원반

III. 회의 결과(요지)

1

의안 제1호

‘체납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결손처분의 건’

① 안건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결손처분) 및 공단 회계규정 제16조 등에 따라 사망, 행방불명, 해외이주, 의료급여수급자, 파산 등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건강보험료 38,169건 78,912,094,821원과 장기요양보험료 36,226건 4,695,322,273원을 결손처분 하고자 함

② 의견 요지

- 해당 안건에 대한 이견 없음

③ 의결 결과

- 원안대로 의결

2

의안 제2호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건’

① 안건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을 선지급금 잔액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 ▶ 대구·경북 의료기관은 '20.5 ~ 10월(6개월) → '20.9 ~ 12월(4개월)
 - ▶ 전국 의료기관/약국은 '20.7 ~ 12월(6개월) → '20.9 ~ 12월(4개월)
 - ▶ 특별 재정지원기관(채권양도기관)은 '20.7 ~ 12월(6개월) → '20.10 ~ 12월(3개월)

② 의견 요지

-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건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한 금액이 연내에 상환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더 이상 연기 또는 조정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한다.

③ 의결 결과

- 원안대로 의결